

보험금청구절차 및 서류 안내

○ 청구절차



○ 구비서류

담보명	구비서류	발급처	비고
공통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재단(삼성화재)	
	사고통지서	재단(삼성화재)	
	개인정보처리동의서(2면)	재단(삼성화재)	
	통장사본	금융기관	
사망	사망진단서 원본	의료기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관청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관청	다수상속 시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입원일당	진단서	의료기관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 확인서	의료기관	
의료 실비	입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진단서	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처방조제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압 치료비	진단서	의료기관	
뇌졸중 진단비	진단서	의료기관	
치아보철치료	진단서(치아번호 및 치료내용 포함)	의료기관	
치아보존치료	진단서(치아번호 및 치료내용 포함)	의료기관	

※ 사고내용 및 담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1899-0547 / ✉ center@sports.or.kr

○ 보내실 곳

- 팩스: 0507-0336-9345
- 메일: center@sport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8층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부 개발·운영팀

보험금 청구서 (단체상해보험용)

QR코드 촬영으로
'삼성화재APP' 다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인적 사항 및 보상 안내 받으실 분

직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급안내 (피보험자)	전화번호	직원과의 관계			
	안내방법	* 반드시 한 가지는 선택 (□안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안내거부 <input type="checkbox"/> (e-mail, 팩스, 주소중 선택 사항 기재: _____)			

2. 사고사항 (해당 사고 유형에 V표시하십시오. 상해 질병 교통사고)

발생일자	주요 증상/병명
내원 경위	
해당 시 체크	임신·유산·출산 관련 <input type="checkbox"/> 치아보철 <input type="checkbox"/> 한방 진료 <input type="checkbox"/> 산재사고·공상 <input type="checkbox"/>

3. 진료사항

진료 형태 구분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진료일자
외래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외래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4. 보험금 수령 계좌 (피보험자 본인의 계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인 직원의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피보험자가 직원 본인이 아닌 경우 직원의 계좌로 수령하시려면 「위임장」과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확인 사항

- 본인은 별지 1.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일 등)를 안내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2.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을 말합니다.

작성일 : 20 년 월 일

피보험자(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보험수익자(성명) : (서명)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024년도 국가대표선수 사고통지서



1 사고개요

소속단체명	(대한체육회)		
사고종목			
사고지역	(시·도)	(시·군·구)	사고장소
사고시점	<input type="checkbox"/> 운동 중 사고 발생 <input type="checkbox"/> 운동과 무관하게 사고 발생		
예상 치료기간	<input type="checkbox"/> 사망/후유장해 <input type="checkbox"/> 5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5일 이상 3주 미만 <input type="checkbox"/> 3주 이상		

2 사고원인

사고원인 제공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제 3 자
접촉 충돌	<input type="checkbox"/> 사람과 접촉·충돌 <input type="checkbox"/> 운동 장비(공 포함)에 접촉·충돌 <input type="checkbox"/> 주변 시설에 접촉·충돌 <input type="checkbox"/> 물품에 접촉·충돌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자전거에 접촉·충돌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미끄러져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걸려 넘어짐 <input type="checkbox"/> 균형을 잃어 넘어짐
부주의	<input type="checkbox"/> 무리한 동작·운동 <input type="checkbox"/> 파울 플레이 <input type="checkbox"/> 급작스러운 움직임·방향전환
기타 외부요인	<input type="checkbox"/> 행사시설·경기장 관리 및 검사 미비 <input type="checkbox"/> 물에 빠짐 <input type="checkbox"/> 추락·떨어짐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부상 부위 및 유형

물건 손과: _____ *단, 스포츠여행자 강제보험에는 보상이 가질 수 없습니다.

머리(안면부 포함): 두피, 눈, 코, 입, 치아, 이마, 턱, 골대(양), 그 외 머리 부위

상반신: 가슴, 배, 등, 허리

하체 상부: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하체 하부: 정강이, 종아리, 아킬레스건

기타: _____

목
 어깨
 위팔: 어깨 아래 - 팔꿈치 위
 팔꿈치
 아랫팔: 팔꿈치 아래 - 손목 위
 손목
 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고관절
 무릎
 발목
 발: 발바닥, 발등, 발가락, 발톱

유형	설명
<input type="checkbox"/> 사망	사고 즉시 혹은 30일 이내 사망
<input type="checkbox"/> 염좌	관절부위의 인대 혹은 근육이 일부 늘어나거나 찢어져 통증, 부어오름으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이 불편한 부상
<input type="checkbox"/> 골절	뼈가 완전히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 (추후에 알게 된 경우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탈구	관절을 구성하는 골, 연골, 인대 등이 정상적 위치에서 이탈하는 부상. 흔히 뼈가 빠졌다고 일컫는 부상
<input type="checkbox"/> 열상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
<input type="checkbox"/> 절단	신체의 일부가 잘리는 부상, 손발톱, 머리카락 등의 절단까지 포함
<input type="checkbox"/> 찰과상	긁힘, 마찰에 의해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input type="checkbox"/> 출혈	어떤 충격에 의해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부상
<input type="checkbox"/> 좌상	타박상. 내부의 근육, 장기 등이 충격을 받는 부상, 멍, 통증, 부어오름 등의 증상이 수반됨
<input type="checkbox"/> 자상	외부의 어떤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피부가 찢리거나 베어서 생긴 상처
<input type="checkbox"/> 통증	물리적인 충격이나 근육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불쾌하고 아픈 감각
<input type="checkbox"/> 염증	신체 조직이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체내의 반응.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나타남
<input type="checkbox"/> 파열	터짐. 외부의 힘 또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끊어지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잔존물 대위, 구상업무 관련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 자동차 사고 연계처리를 위한 당사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보험계약(장기, 일반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업무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 이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본인확인정보(C, I, D, I), 주소, 성별, 직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 증명, 주민등록(초)등본 상의 정보, 자동차등록(원부)증,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국가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재보험사, 해외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손해보험협회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국가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구상관련업무
 - 금융거래 기관 : 금융거래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 등) *자동차보험에 한함
 -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 외국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국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 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성별, 직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 증명 ·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국외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성별, 연령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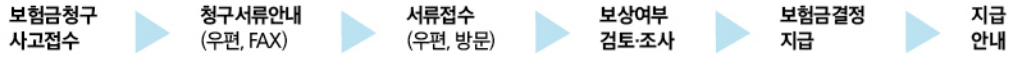
3.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 대상 기관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조회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감독규정 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 상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

-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www.samsungfire.com)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권 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소보운영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 전화상담 : 1588-5114 (질병 및 상해 사고접수 /ARS 착신 후 5번을 누르십시오.)
- 우편 : (우066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B동 삼성화재 3층 소보운영파트

예상 지급기일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당사 콜센터(TEL 1588-51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

-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걱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료', '선택진료이외' 항목의 비용
- 진료비 확인방법 :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요청, 모바일 앱, 우편 / FAX요청, 방문상담 요청으로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2000)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의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의

① 본인은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등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 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보험사고 조사업체·손해사정업체, 위탁콜센터, 의료기관(의사), 법무법인(변호사), 추심업체, 잔존물 매각업체],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계약관리 업무

청구·지급 절차 안내장 실손보험금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보험금 청구



연락주세요

콜센터(1588-5114)



서류준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고)



3년 이내 청구가능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2년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보험금 지급



3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조사협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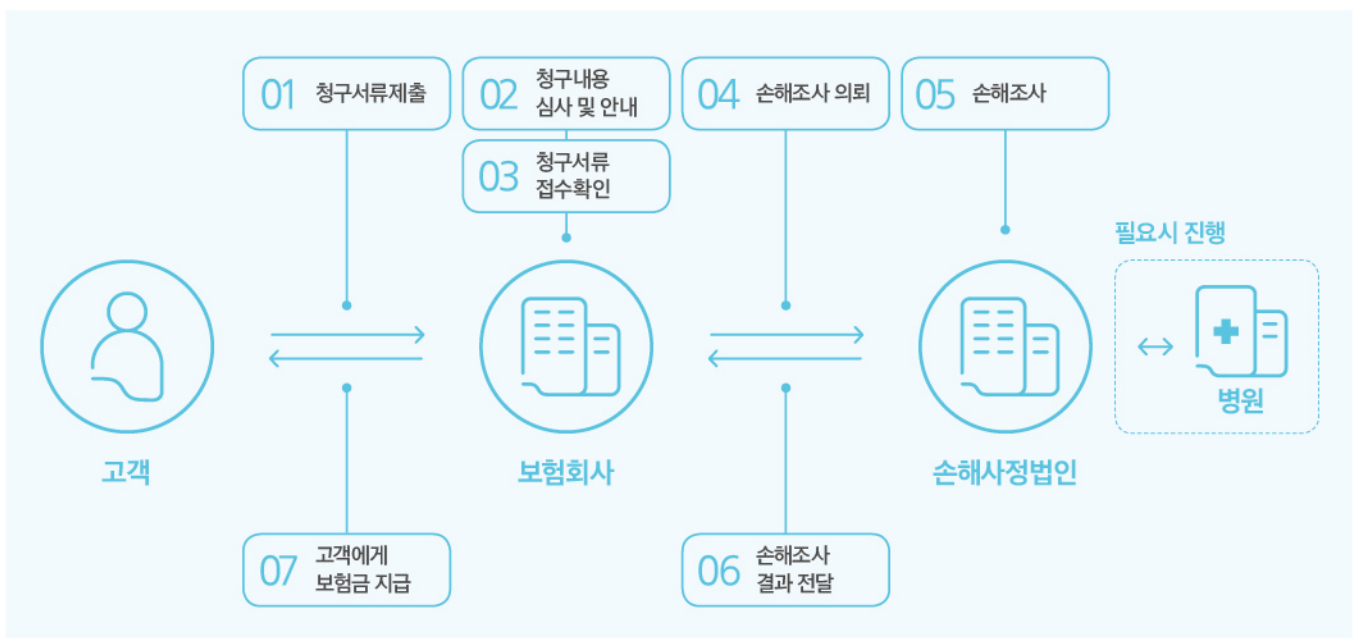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필요



문제발생시 도와드려요

우리회사 콜센터(1588-5114)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Q&A

Q1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Q2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또는 의료 심사 등에 동의 거부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Q3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심사·조사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지급보험금)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 보험금보다 작으면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



Q5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입니다.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심사 결과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거절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거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 된 경우 보험금은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Q7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는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를 전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청구서류와 함께 보험회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보험회사 특약에 따라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8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 통보하여 동의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을 때

Q9 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Q8 참조),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10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다시 의료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 할 때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하며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Q11 손해사정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